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9.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08. 9. 12. 차기 우리군 금고로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가 선정되어 '08. 9. 17. 금고계약이 체결됨.
- 2회에 걸친 금고지정심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생산성 높고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기하고자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군 금고 계약 기간 조정(안 제2조제3항)
  -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  
(타시군과 형평 조정 및 군금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제3조제1항)
  - 금고선정 심의당시 도출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2008. 12. 19 ~ 2009. 1. 8. 실시(의견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총 계	100	
	소 계	3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9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3점)	(25)	
	소 계	18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소 계	1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소 계	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계획	(3)	
	소 계	10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금고지정) ① ~ ②(생략)</p> <p>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u>3</u> <u>년으로 하되</u>,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p>	<p>제2조(금고지정)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u>4</u> <u>년으로 하되</u>, ----- ----- --.</p>

현 행				개 정 안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항 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계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5점) - 자기자본비율 (수익성, 5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안정성, 2점)	(15) (1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9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비율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3점)	(10)  (2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5) (5) (5) (3)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6) (4) (5) (3)	
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소 계	2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19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7) (7) (6)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9) (5)	

현 행				개 정 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5)			나.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5)			라. OCR 센터 운영계획	(3)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군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5)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군과 협력사업 추진계획	(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 관계 법령

## ◆ 지방재정법

### 제77조(금고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참고자료)

## 강원도 시군 금고 약정 현황

기관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방법	관련법령
도청	농협	신한	'06 ~ '08	3	공개경쟁	규칙
춘천	농협	신한	'07 ~ '09	3	공개경쟁	규칙
원주	농협	신한	'08 ~ '11	4	공개경쟁	규칙
강릉	농협	신한	'09 ~ '12	4	공개경쟁	규칙
동해	농협	농협	'08 ~ '11	4	공개경쟁	규칙
태백	농협	농협	'07 ~ '10	4	공개경쟁	규칙
속초	농협	농협	'07 ~ '10	4	공개경쟁	규칙
삼척	농협	농협	'07 ~ '10	4	공개경쟁	규칙
홍천	농협	농협	'08 ~ '11	4	공개경쟁	규칙
횡성	농협	농협	'08 ~ '11	4	공개경쟁	규칙
영월	농협	농협	'08 ~ '10	3	공개경쟁	규칙
평창	농협	농협	'09 ~ '11	3	공개경쟁	조례
정선	농협	농협	'09 ~ '12	4	공개(수의)	규칙
철원	농협	농협	'09 ~ '12	4	공개(수의)	규칙
화천	농협	농협	'07 ~ '09	3	공개경쟁	규칙
양구	농협	농협	'08 ~ '11	4	공개경쟁	조례
인제	농협	농협	'07 ~ '10	4	공개경쟁	규칙
고성	농협	농협	'07 ~ '10	4	공개경쟁	규칙
양양	농협	농협	'07 ~ '10	4	제한경쟁	규칙